

1. 개정이유

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·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화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자에게 송부하는 납부통지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 및 지로영수증 서식 변경(별지 제34호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(붙임)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납부안내

- ① 전국 금융기관 창구납부
- ② 신용카드 납부
 - (<http://njy.mafra.go.kr/>)
- ③ 인터넷으로 납부
 - (<https://www.giro.or.kr>)
- ④ 가상계좌번호로 입금

※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뒷면 참조

지로통지서 (금융기관용)			
O.C.R	지로번호	□□□□□□	금액 원

지로번호		고객조회번호	C	금액	C		Code
------	--	--------	---	----	---	--	------

() *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원.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.

통 지 번 호			
성 명(명칭)		전용목적	
납 부 금 액		납부기한	까지

위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. < 한 국 농 어 촌 공 사 >

년 월 일

수 납 인

안 내

-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·농지전용신고(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·허가·승인 등을 포함합니다. 이하 “허가등”이라 합니다)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등이 거부됩니다.
- 농지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「농지법」 제38조제11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카드 납부 및 납부확인서 발급: 농지공간포털(<https://njy.mafra.go.kr>)
 - ※ 본인확인 방법: 공인인증 또는 휴대전화인증
- 인터넷지로 납부(공인인증서 필요): 회원가입 후 로그인 → 지로번호 입력(OCR 7001293) 후 이용기관 확인(한국농어촌공사) → 납부고객조회번호(통지번호), 납부금액, 체크번호, 휴대전화번호 → 계좌이체
- 그 밖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